

# 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준]



# 목 차

- 1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 2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 9
- 3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 [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4. 1. 09.

나. 발 의 자 :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이재운,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신미정,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4. 1. 09.

###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방연물품의 비치 등에 대해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교육 및 홍보에 대해 정함(안 제4조)

라. 지원에 대해 정함(안 제5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제4조 등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 다. 합 의 : 안전총괄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4. 01. 02. ~ 01. 08.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 소방청 통계를 보면 2023년 경상남도 화재 사망자 22명 중 연기 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16명으로 나와 있음.

- 이처럼 각종 화재사고시 불에 의한 화상보다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번하며 유독가스에 노출될 경우 대피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식을 잃어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화재현장에서 방연마스크 등 방연물품 착용은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는 물론 생명보호 및 인명피해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제2조 방연물품의 정의에서 방연물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는 있으나 화재현장의 급박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남녀노소 공용사용 가능한 제품인지 등 제품 구입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임.
- 소방청 통계에 2023년 경상남도 화재 건수 199건 중 아파트 32건, 단독주택 33건으로 가장 많이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인 것으로 나와 있음, 이 조례 시행 시에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13. (생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3.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말한다.
4. “재난안전사업자”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제품임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기준·대상·절차·표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시행 2023. 4. 17.]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9호, 2023. 4. 17., 전부개정.]

**제3조(인증대상 및 신청)**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신청인은 법 제16조제3항 및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설명서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전검토표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의 발급일에 대한 기준을 최근 5년 이내로 한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6. 논문 또는 학술지 등 신청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7.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즉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결과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 전에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스스로 반려를 원하거나 제3항에 따라 명시한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접수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인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전공개 동의서를 받았을 때는 추후 별도의 동의가 없어도 공개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서류 제출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별표 1]

##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운영규정 제3조 관련)

| 품목 분류          |                                     | 품목                                                                        |
|----------------|-------------------------------------|---------------------------------------------------------------------------|
| 1.자연재난<br>예방제품 | 1-1.풍수해 관련 자연재난 예방제품                | 풍수해를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
|                | 1-2.지진 및 화산활동 관련 자연재난 예방제품          | 지진 및 화산 피해를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
|                | 1-3.기타 자연재난(항사, 대설, 폭염 등) 예방제품      | 항사 피해를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
|                |                                     | 대설 피해를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
| 2.사회재난<br>예방제품 |                                     | 그 외 자연재난을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
|                | 2-1.화재 및 폭발·붕괴 관련 사회재난 예방제품         | 화재 및 폭발 발생을 사전에 진단·예측하거나 점검하여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
|                |                                     | 구조물의 효용성 증진 및 과학적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진단하거나 점검하여 피해를 예방 또는 피해를 경감 하기 위한 제품 |
|                | 2-2.교통사고 관련 사회재난 예방제품               | 구조물외 전기, 가스, 전자파 등의 재난상황을 사전에 진단·점검하여 피해를 예방 또는 피해를 경감 하기 위한 제품           |
|                | 2-3.감염병, 화생방, 환경오염 관련 사회재난 예방제품     | 교통·해상사고 예방제품 및 지원제품                                                       |
|                |                                     | 감염병, 화생방, 환경오염 사고 방지용 피복, 마스크 및 지원제품                                      |
| 3.재난대응<br>제품   | 2-4.기타 안전사고 관련 예방제품(제품재해, 범죄, 보안 등) | 감염병, 화생방, 환경오염 사고 방지용 기타 예방제품 및 지원제품                                      |
|                |                                     | 제품재해, 테러 등 기타 안전사고 대비용 피복 및 지원제품                                          |
|                | 3-1.재난 상황관리 관련 제품                   | 제품재해 테러 등 기타 안전사고 대비용 개인 보호구 등 기타 예방제품 및 지원제품                             |
|                | 3-2.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제품            | 재난 상황관리용 통신·방송 장비 및 유지보수 등 지원제품                                           |
| 4.재난복구<br>제품   | 3-3.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제품              |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 관련 제품 및 지원제품                                             |
|                |                                     | 구난용 운송 및 물품취급 장비 및 지원장비                                                   |
|                | 4-1.시설피해 복구제품                       | 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제품 및 지원제품                                                 |
| 5.기타           | 4-2.재난현장 환경 정비제품                    | 시설피해 복구 장비 및 지원장비                                                         |
|                |                                     | 재난현장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장비 및 지원장비                                                |
|                | 5-1.기타 재난안전 제품                      | 재난현장 청소장비 및 지원장비                                                          |
|                |                                     |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도 국민이 사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품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35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2.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3.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
5.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6. 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7. 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8. 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9. 소방용 기계·기구,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지원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11. 이 법 또는 다른 소방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2.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2020. 1. 29.] [법률 제16878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4. 1. 09.

나. 발 의 자 : 박수자 의원 대표발의

(박수자, 이흥희,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4. 1. 09.

## 2. 제안이유

○ 귀농귀촌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통해 귀농·  
귀촌인의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사항(안 제4조)

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행복농촌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12. 22. ~ 2023. 12. 27.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거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 필요.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귀농귀촌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의 원활한 정착과 인구유입을 촉진 하기 위한 것으로,

○ 그동안 전원주택 단지 등에서 기반시설 확충 미흡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빈번히 발생했던 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농촌 생활 영위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 조례의 목적 달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첨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공간과 지역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결정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 향후,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은 물론 인구 유출 방지 정책과 연계되는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지원되고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속에서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응한 정책과 계획 및 사업이 관련 분야간 통합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금”이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세제혜택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등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2.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3.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 인구감소지역 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1. 5.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1. 9.

## 2. 제안이유

- 향노화힐링랜드를 찾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사 업 명 : 2024년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위탁 운영
- 나. 위 치 : 향노화힐링랜드 일원(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834)
- 다. 사 업 비 : 93,470천원(국 46,735 도 32,714 군 14,021)
- 라. 사 업 량 : 숲해설가 1명, 산림치유지도사 2명

#### 마. 시설현황

- 자연휴양림 : Y자형 출렁다리, 자생식물원, 숲속놀이터 등
- 치유의 숲 : 무장애숲길, 산림치유센터, 숲체험장, 명상숲길 등

#### 바. 위탁대상 사무 : 산림서비스(숲해설·산림치유) 기획·운영

- 산림서비스(대면 및 비대면 병행) 신규개발 및 홍보물 제작
  - 전 연령층 맞춤형 산림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운영, 설문조사(피드백) 및 결과를 통한 효과 분석
- 사. 위탁기간 : 2024. 4. ~ 12.(예산범위내) ※ 국·도비 예산확보 사업
- 아. 향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사업규모 및 과업목표 설정)
- 사업자 선정(사업공고 접수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협약체결 → 사업수행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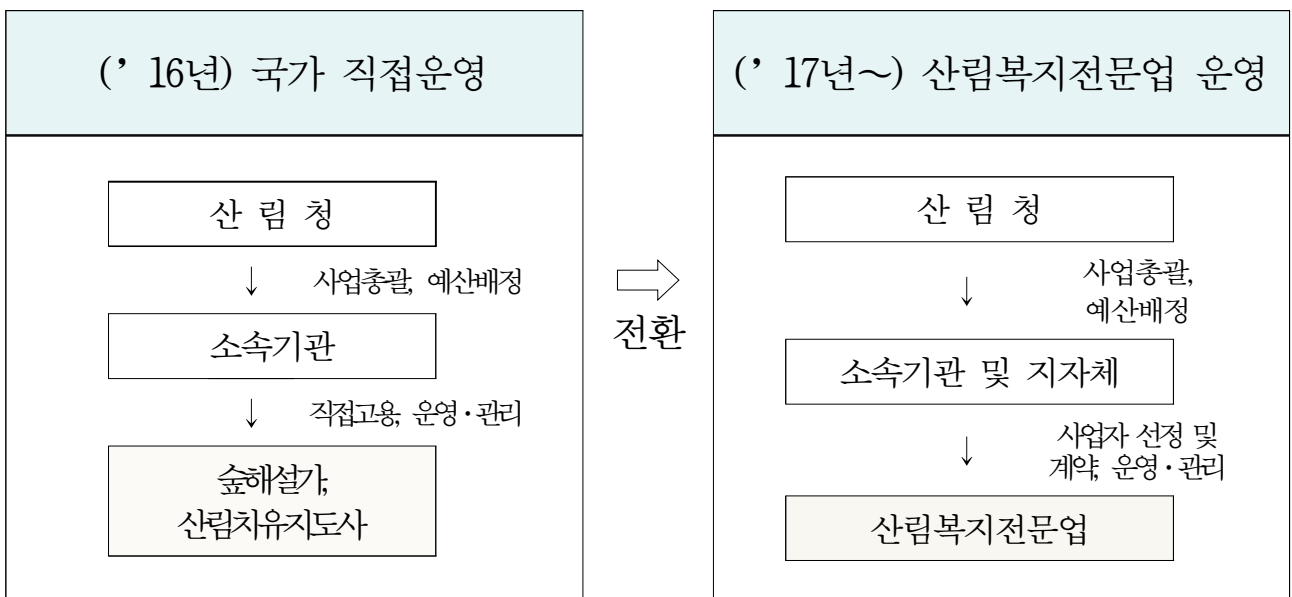
## 4. 참고사항

#### 가. 2023년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민간위탁 운영실적

- 운영기간 : 2023. 4. ~ 12.
- 장 소 : 향노화힐링랜드 일원
  - － 산림치유센터, 자생식물원, 숲속놀이터, 무장애데크로드 등
- 대 상 : 유아에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
- 인 원 : 1회 20명 이내
- 위탁기관 : 좋은숲(대표 신승호)
- 운영방법 : 프로그램별 숲해설가(1인)·산림치유지도사(2인) 자율 진행
- 참여인원 : 총 4,615명(숲해설 2,055명, 산림치유 2,560명)
- 신청방법 : 힐링랜드 홈페이지 및 전화접수 예약, 당일 현장모집
- 체 험 료 : 숲해설 무료 / 산림치유 어른 1만원, 청소년 5천원
- 프로그램 : 숲해설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 숲 해설 : 주5일, 일3회(10:00~11:00, 13:00~14:00, 15:00~16:00)
  - 산림치유 : 주6일, 일2회(09:30~12:00, 13:30~16:00)
  - ※ 계절별 힐링랜드 현장에 맞추어 프로그램 내용 수정·보완 운영
  - 세외수입 : 금19,433천원(산림치유프로그램) ※ 숲해설 무료
- 나.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위탁(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분야 활성화

### 〈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으로 전환 〉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항노화힐링랜드를 찾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문성과 산림복지서비스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의 규정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근거에 의해 제출된 의안으로 본 동의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 ①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 ① 산림복지전문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 ③ 산림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⑦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제20조(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1.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2. 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자
4.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
6.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

1.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숲길: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제8조(운영계획 수립)**

치유의 숲시설의 운영·관리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유의 숲의 일반현황
2. 치유의 숲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계획
4. 산림치유지도사 배치계획

### **제9조(프로그램 운영)**

- ① 운영·관리자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

준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다.

③ 운영·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산림치유 환경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계획하는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힐링랜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힐링랜드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22. 11. 15.>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2022.11.30.)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항전부개정 2014.10.01)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4.10.01)
-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항전부개정 2014.10.01 2015.12.10. 2022.11.30.)
-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2015.12.10.)
-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2014.10.01)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